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77

발의연월일: 2022. 10. 21.

발 의 자: 김주영・양경숙・박상혁

이개호・김수흥・조정식

강병원 • 이원욱 • 이용빈

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시행해온 것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함.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약 100조원씩 증가하는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매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가 늘어온 만큼 해당 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이 증대하도록 경제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으로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 0조의32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를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 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 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 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 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 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 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 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1.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 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 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 다. (생 략)

③ ~ ⑩ (생 략)

<u>를 말한다</u>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